



문서번호	맑은환경과-34027
결재일자	2015. 12. 1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환경정책팀장	맑은환경과장	주민생활국장		
전미애	代최철성	박사채	12/18 소판수		
협조					

『성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』 수립계획

2015. 12.



「성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」 수립계획

지구온난화,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
I 큰 거

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(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)

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·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제38조(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)

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[시행일:2015.1.1.]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관한 부분

II 수립배경 및 목적

□ 수립배경

- IPCC(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)¹⁾ 제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(2007년)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함

1)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) : 세계기상기구(WMO)와 유엔환경계획(UNEP)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8년 공동으로 IPCC를 발족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포함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

-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(Response)을 위해서는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완화(Mitigation) 정책과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지속에 따른 새로운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(Adaptation)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음
- 2010년 10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('11~'15)을 수립, 이어 2011년 12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('12~'16)이 수립됨
- 이후 실질적으로 체감이 높은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필요성에 따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(2012. 12. 27)을 통해 '15년부터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·시행이 의무화됨

□ 수립목적

-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
- 이를 위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동구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코자 함

Ⅲ 계획의 개요

□ 계획명: 성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(2016~2020)

□ 추진기간: '15. 12월 ~ '16. 1월(2개월간)

□ 계획의 범위

- 공간적 범위: 성동구 전역(17개 행정동)
- 시간적 범위: 2016 ~ 2020년(5년)
- 내용적 범위
 - 계획수립 대상 적응분야(5개분야): 재난·재해, 건강, 물관리, 산림·생태계, 교육홍보
 - 계획수립 내용: 기후변화 현황·전망 조사 및 취약성 평가, 계획의 비전 및 목표,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및 집행 방안 등

V

세부추진계획 내용

□ 계획의 개요

- 수립배경 및 근거, 추진경위
- 계획의 범위 및 수립절차

□ 지역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

- 성동구 지역현황 및 특성
- 성동구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
-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(사례) 및 취약성 평가
- 종합분석 및 중점추진사항

□ 계획의 목표와 전략

□ 부문별 세부시행계획

- 재난·재해 분야
 - 풍수해 및 침수피해 방재기능 강화
 - 비탈면 재난피해 저감 방재기반 강화
- 건강 분야
 - 폭염, 자외선, 한파 등 기상재해 적응
 - 감염병 및 대기오염 적응
- 물관리 분야
 - 이상기후 대응 방재체계 구축
 - 물자급능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물관리체계 구축
 - 수질개선 및 풍부한 수생태 보전
- 산림·생태계 분야
 -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
 -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도시녹지의 기능 증진
 - 하천 및 경작지 기능 강화

□ 계획의 집행 및 관리

- 이행추진 기반 구축
- 이행관리 및 점검

VI

추진경과 및 추진계획

□ 그간 추진경위 및 내용

- 2012.12.27. :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(2015.1.1. 부터 시행)
- 2015. 1.30. :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1차 워크샵(환경부 주최)
- 2015. 5.19. :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2차 워크샵(환경부 주최)
- 2015. 7. 3. :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컨설팅(환경부 주최)
- 2015. 7월 ~ 11월 : 기초자료 수집

□ 추진계획

- 2015.12. . : 『성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』 수립계획 방침
- 2015.12.11.까지 : 국가 및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근거한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발제
- 2015.12.18.까지 : 분야별(관련부서)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출 협조 요청
 - 관련부서: 지역경제과,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노인청소년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안전관리과, 치수과, 질병예방과 등
- 2015.12.31.까지 : 해당부서 의견수렴 및 자료 수합
- 2016. 1.29.까지 : 「성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」 수립 및 공표

VII

행정사항

- 관련부서 분야별 세부적응대책 제출 (관련부서 → 맑은환경과): 12.31.까지
- 『성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』에는 『성동구 저탄소녹색도시 구축계획』
사항을 포함한 통합 계획으로 운영